



제 417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소상공인 등 등록기준 일시적 미충족 시
처분 유예 근거 마련〉

■ 정부 제출, 의안번호 제2202200호

2024. 8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최선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소상공인 등 등록기준 일시적 미충족 시 처분 유예 근거 마련	2

I. 제안경위

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향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향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소상공인 등 등록기준 일시적 미충족 시 처분 유예 근거 마련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등이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<단서 신설>	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 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된 경우. 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

현행	개정안
5. ~ 8. (생략) ②·③ (생략)	<u>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 제23조¹⁾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(이하 ‘위탁관리업’이라 함)²⁾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, 시설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위탁관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1) 「항로표지법」

제23조(위탁관리업의 등록 등) 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(이하 “위탁관리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,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**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

2.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

3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

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**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**

5. ~ 8. (생략)

2) 위탁관리업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

개정안은 코로나19에 이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이 위탁관리업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,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.

- 정부는 국정과제인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’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인력·자본 등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동 개정안을 포함한 총 15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.

□ 다만,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이 아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(기존 30일 유예규정 삭제)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.

- 특히, 소상공인 등이 아닌 위탁관리업자에는 중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중기업에 대한 상대적 규제 강화 우려가 있음.

□ 또한, 제재처분 유예의 대상을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규정³⁾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상공인 외의 유예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.

3)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□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, 해양수산부는 유예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고, 소상공인 외에 소기업까지 유예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바,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⁴⁾을 ‘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’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한편, 소상공인 등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와 관련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하위 법령 마련 시에 유예사유를 규정하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 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⁴⁾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을 ‘소상공인 등’으로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.

□ 따라서,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부처 등 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.

4)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의2는 ‘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’의 대상으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음.

「행정규제기본법」

제8조의2(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.

문 의 처
02)6788-5418